



“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”

(04427)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3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78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임아영[6578]/E-mail : rimaah90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7963호

시행일자 2023. 9. 2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‘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’ 변경사항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-1261(2023. 9. 20.)

3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중 ‘중증 아토피성 피부염(L20.85, V308)’의 산정특례 등록기준의 경과 만료에 따른 등록기준 변경사항을 우리 협회 회원들에게 안내를 협조 요청해온 바, 다음과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가. 변경사항

- 1) 대상 질환 : 중증 아토피성피부염(상병코드 L20.85, 01, 특정기호 V308)
- 2) 내용 : 제도개선일(2023. 4. 1.)로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경과규정 기간 만료에 따른 ‘청소년 및 소아 등록기준 경과규정’ 삭제

<참고 : 청소년 및 소아 등록기준 경과규정(삭제)>

(청소년 경과규정) 급여개시일(2023. 4. 1.) 이전부터 이미 생물학적 제제 또는 JAK 억제제를 투여 중인 청소년 환자의 경우,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‘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58호 관련)’을 만족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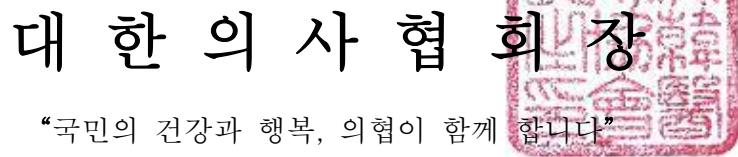
(소아 경과규정) 급여개시일(2023. 4. 1.) 이전부터 이미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 중인 소아 환자의 경우,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‘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58호 관련)’을 만족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

나. 시행일 : 2023. 10. 1.

다. 세부등록기준 : [붙임자료 #2] 참조

#붙임자료 :

1.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.
2. (23.10.1. 기준)중증난치질환,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부. 끝.



*수신처 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